

OTA 결정문

결정문 개요

조세심판국(The Office of Tax Appeals, OTA)에 제기된 모든 항소 건에 대해 규정에서 “결정문”으로 지칭하는 서면 결정서가 발행되며, 귀하와 세무 기관에 발송됩니다. 결정문에는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사실과 법률이 기술되며, 조세 항소 패널이 해당 결정을 내리게 된 사유가 설명됩니다.

시기

구두 심리를 선택한 경우, 추가 증거나 주장의 제출을 허용하기 위해 기록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 한, 결정문은 심리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귀하와 세무 기관에 발송됩니다. 구두 심리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서면 의견 제출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결정문에 대한 불복

결정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OTA가 결정문을 발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리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 또는 세무 기관이 재심리 청구를 제출하지 않는 한, OTA 결정문은 발행 후 30일이 지나면 최종 확정됩니다.

결정문에 동의하지 않고 해당 결정문이 최종 결정된 경우, 귀하는 납세 의무액을 납부한 후 기한 내에 California 상급법원에 환급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항소에 대한 OTA의 결정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택 가능한 옵션에 대한 추가 정보는 OTA 간행물 “OTA 판결 불복”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OTA는 모든 결정문을 게시해야 하며, 결정문이 최종 확정된 후에는 OTA 웹사이트(www.ota.ca.gov)에 게시됩니다.

과거 OTA 결정문은 OT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OTA 결정문은 판례의 성격을 가지며, 유사한 사건에 대해 OTA가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OTA 웹사이트 페이지에 게시된 후속 판례 결정문에서 OTA가 판례적 지위를 철회하지 않는 한 California 주 조세형평국 (California State Board of Equalization, BOE)의 판례 결정문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사업세 항소에 관한 BOE의 판례 결정문은 California 주 조세수수료국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CDTFA) 웹사이트(www.cdtfa.ca.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